

부동산 분양계약 인지세 납부 안내

▣ 관련 법규 안내

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의거,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▣ 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

구 분	내 용
과세대상	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
납부기한	계약서 작성시 계약서별로 수입인지를 징부하여 인지세를 납부
전자수입인지 구입처	전자수입인지 사이트 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우체국 및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

▣ 인지세 금액 안내

구 분	세 액	
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증서 (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등)	1,000만원 ~ 3,000만원	2만원
	3,000만원 ~ 5,000만원	3만원
	5,000만원 ~ 1억원	7만원
	1억원 ~ 10억원	15만원
	10억원 초과	30만원

※ 미 납부시 기간에 해당하는 구간별 가산세가 발생 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(3개월 이내 납부세액의 100%, 3개월 초과 ~ 6개월 이내 납부세액의 200%, 6개월 초과시 납부세액의 300%)

▣ 인지세(전자수입인지) 구매방법

▶ 온라인 구매방법

- ① 해당 홈페이지 접속 -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네이버 검색창 "전자수입인지" 검색
- ②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 선택
- ③ 회원 또는 비회원 서비스 로그인
- ④ 구매 >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서비스 _ 항목별 입력
- ⑤ 출력



- 1) 용도 : 인지세 납부
- 2) 과세문서종류 : 1.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
- 3) 금액 : 150,000원
- 4) 건수 : 1건

▶ 오프라인 구매방법

- ① 우체국(우편물취급소 불가) 및 은행 방문 >
- ② 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작성 (현금 수납만 가능) >
- ③ 전자수입인지발급

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단순 참고용이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고, 미 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를 납부 하셔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